

11.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906호 1999. 2. 8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토지 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도 그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

부 칙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제2항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국가 또
는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주택회보